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이승미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홍국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13조는 시 사무와 관련이 없는 공익제보의 경우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그 처리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아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작성·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원칙적으로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이에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소관 기관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시에 접수되는 공익제보는 직접처리, 이송,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각’ 개념은 실제 적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제13조제4항의 ‘기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익제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울러, 공익제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때,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등은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고 내용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조례 내용도 수정함(안 제11조제3항).
- 나.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타 기관에 이첩 시, 조사 의견을 첨부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한 의무 규정, 공익제보 중 기각 사항을 시장에게 월별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4항)
- 다.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로 이송하는 임의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 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관련 홍보 강화 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호)
- 마. 그 밖에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하거나 복잡한 문장 또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하”를 “소속 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사위원회내”를 “감사위원회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의 조제목 중 “회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동의로서 임시”를 “동의를 받아 임시 회의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된”을 “관련된”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을 “공익제보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받으면”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본문 중 “해고, 그 밖에”를 “해고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를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평균 임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월평균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피해나 비용 지출로 인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공익신고의 경우”를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급하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정상”을 “재정에”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을 “공익을 증진시킨”으로 하고,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을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제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시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조사 조치하며, 관계 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이첩 시, 신고의 내용과 대상이 해당 기관의 공익제보 조사·처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제9조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를 따로 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관계 기관 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이첩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제도에 대한”을 “보호제도의 활성화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및 안심번호사 대리 신고 제도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민 안내 강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 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u>소속하</u> 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 ----- ----- <u>소속 하</u>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감사위원회내</u>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 -----, ----- ----- <u>감사위원회 내</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 ----- <u>대해서는 예산의 범위</u> ----- -----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u>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u> 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u>동의로서 임시</u> 개최할 수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 <u>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 4. (생략)

③ ~ ⑤ (생략)

--- 동의를 받아 임시 회의를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
----- 관련된 -----
--- 공익제보를 할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 .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받은 경우에는 -----
----- 않는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피해나 비용 지출로 인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

-----.

1. ----- 해고 등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월평균액 ----- . ----- 지급 -----
-----.

④ _____

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⑧ (생략)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 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 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 ② (생략)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

----- 대해서 -----
----- 않을 -----

⑤ _____

예외로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포상금) ① -----

----- 재정에

----- 공익을 증진시킨 -----

----- . 다만,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 제보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

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하'담당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통하며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

④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시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조사 조치하며, 관계 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이첩시, 신고의 내용과 대상이 해당 기관의 공익제보 조사·처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제9조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를 따로 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관계 기관 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이

⑤ ~ ⑦ (생략)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칩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
지와 같음)

제21조(홍보 등) -----
보호제도의 활성화와 -----

-----.

1. 2. (현행과 같음)

3.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및 안심변
호사 대리 신고 제도 관련 홍보
물 제작·배포 등 시민 안내 강
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의 자구를 수정하고,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 이첩관련 사안¹⁾을 신설한 것으로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결과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제21조(홍보 등)제3호에 따른 공익제보자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변화(홍보물 제작비용)를 검토하였으나 입안취지 문의 및 서울시 관련부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생산문서 등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²⁾**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1) 통상 이첩에 의한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사무관리비로 제작
- 소요예산 : 1,000천원(부가세 포함)
 - 제작물

	리 플 릿
규격	300*200mm 2단(예상)
수량	3,000부
내용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요건 및 접수 방법 안내



※ 자료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홍보물 제작계획(조사담당관-19336, 2024. 11. 26.)